

광주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5087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박소영

변론 종결2024. 7. 19.

판결 선고2024. 11. 29.

주 문

- D와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10. 30.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2,104,4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104,4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부담하고, 7/10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9814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13. 위 법원에서 '주식회사 F, D은 연대하여 E 주식회사에게 39,018,704원 및 그 중 18,896,464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D은 41,64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17. D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아 위 판결정본에 대하여 E 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9. 5. 27. D에게 송달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1. 1. 망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망 G은 2021. 10.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 4명(D, 피고 B 포함)이다.

라. D과 피고 B을 포함한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은 2022. 5.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2. 피고 B 명의로 2021. 10.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효력발생일인 2021. 10. 30.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인 2/11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피고 C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165,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43,425,600원이었으므로, 이를 공제한 일반담보 가액인

121,574,400원(=165,000,000-43,425,600)에 D의 상속분을 적용한 적극재산 가액은

22,104,436원[=121,574,400×2/11,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바. 피고 C은 2022. 4. 28.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65,000,000원으로 정하였고, 2022.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2022.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1,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줌으로써 원칙적으로 원고 등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 B 및 전득자인 피고 C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및 전득 당시 D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 B이 망 G을 생전에 전적으로 부양한 점 및

향후 모친을 부양할 것인 점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상속분 가액은 다음과 같은 피고 B의 기여분 108,739,790원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1	중고차량 구입비용	14,671,766원
2	자동차보험료	2,648,250원
3	상해보험료	5,980,505원
4	집수리 비용	10,180,000원
5	돌봄센터 간병인 비용	7,822,230원
6	요양병원 입원비	27,072,800원
7	요양병원 기저귀 실비	2,889,900원
8	백내장 수술비	1,577,180원
9	백내장 수술 후 간병비	2,500,000원
10	뇌혈관 수술비	5,095,880원
11	배우자 수술비	6,111,860원
12	배우자 의료비	4,876,310원
13	상속부동산 관련비용(세금, 수수료 등)	17,313,109원
합계	108,739,790원	

나)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채무상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로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만일 D의 채무상태를 알았다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아닌 상속포기를 하게 하였을 것이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D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전득자이다.

2) 판단 가) 피고 B의 기여분 공제 여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집수리 비용, 돌봄센터 간병인 비용, 요양병원 기저귀 실비에 관한 비용의 발생사실 및 피고의 부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중고차량에 대하여는 피고 B이 구입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속부동산 관련비용(세금,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을 제2,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2009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은 점을 참작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부양이라고 보이고, 피고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기여분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선의 여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 B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D이 운영한 회사 관련 연대보증채무인 점, D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가 D의 채무상태를 알았더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아닌 상속포기를 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 C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매매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된 사실, 피고 C이 약정대로 매매대금 165,000,000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2. 4. 28.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G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상속등기가 안 될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 B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인 D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는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발생일인 2021. 10. 3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67,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22. 6. 20.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시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16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2021. 10. 30. 무렵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43,425,6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는

22,104,436원 $[(165,000,000-43,425,600) \times 2/11$, 원 미만 버림]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B 사이에 2021. 10. 30.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약은 22,104,4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104,4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정지선

별지